

-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 출 자 : 2007. 6. 29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7. 9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7. 7. 12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민병구 총무국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
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총 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(㉠)	지출결정액(㉡)	잔액(㉢-㉣)	비 고
일반회계	1,093,630	1,007,162,	86,468	

○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지 결 정 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지출 일자	사 유
계	1,007,162	758,012	-	249,150		
지방선거 보전경비	540,662	291,512	-	249,150	'06.07.11	'06년 본예산 세입부족으로 미반영 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전비용 지급
공무원 성과상여금	212,178	212,178	-	-	2006. 03.20	'06년 본예산 세입부족으로 미반영 된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
공무원건강보험금	42,322	42,322	-	-	2006. 07.10	'06년 본예산 세입부족으로 미반영 된 공무원건강보험금 지급
소송관련 토지매입비	200,000	200,000	-	-	2006. 11.30	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에 따른 토지매입
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재산피해지원금	12,000	12,000	-	-	'06.07.27 ~08.07	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

3. 검토의견

- 2006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,363만원이며 년도 중 지출 결정액은 10억 716만 2천원으로 지방선거보전경비 외 4건 7억 5,8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2억 4,915만원이 남아 불용처리
-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지방선거보전경비 2억 9,151만 2천원, 공무원성과상여금 2억 1,217만 8천원, 공무원건강보험금 4,232만 2천원,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2억원, 태풍(에위니아)내습에 따른 재산피해지원 1,200만원 등
- 이중 지방선거보전경비, 공무원성과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등은 당초 본예산 세입부족과 시기적으로 1차추경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는 소송진행 중 발생사안으로서 예산반영의 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, 그 외 태풍내습으로 인한 재해보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의 예비비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.

- 다만 불용액 2억 4,915만원은 순수 지방선거보전경비의 지출잔액으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 지출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서류심사 등 실사후 지급 잔액과 우편요금의 할인 등으로 불가피한 잔액 반납금이었다 하나 집행액이 지출결정액의 2/1정도로서 이는 선관위의 사전 예측잘못과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지만 기관 상호간 사전 충분한 교감 및 협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사료됨. 불용액과 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만 향후 예비비 지출은 과다책정여부 및 집행시기 등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임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